

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
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443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연료비 상승, 열요금 인상 제한으로 발생한 서울에너지공사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공사 용자금을 반영하기 위해,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연료비와 열요금 간 불균형으로 발생한 서울에너지공사 유동성 위기에 따른 연말 부족자금 보전을 위해 용자금 신규 반영
- 나. 운용규모 : 1,391,634백만원(당초 운용규모 대비 변경사항 없음)

<수입계획 변경내역 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(B)	증 감 (C=B-A)	증 감 율 (D=C/A)
합 계	1,391,634	1,391,634	-	-
용 자 금 원 리 금 회 수	6,067	6,067	-	-
예 수 금	1,119,594	1,119,594	-	-
예 탁 금 원 금 회 수	13,920	13,920	-	-
이 자 수 입	41,010	41,010	-	-
예 처 금 회 수	211,043	211,043	-	-

<지출계획 변경내역>

(단위: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/ 편성목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(B)	증 감 (C=B-A)	증 감 율 (D=C/A)
합 계	1,391,634	1,391,634	-	-
투 자 기 관 금 용 지 원	150,000	221,300	71,300	47.5
공 사 용 자 지 원	150,000	221,300	71,300	47.5
공 사 직 접 용 자	150,000	221,300	71,300	47.5
용 자 금	150,000	221,300	71,300	47.5
재 무 활 동	1,241,627	1,170,327	△71,300	△5.7
내 부 거 래 지 출	1,079,007	1,079,007	-	-
기금특별회계용자지원	1,079,007	1,079,007	-	-
예 탁 금	953,340	953,340	-	-
예 수금원리금상환	125,667	125,667	-	-
보 전 지 출	162,620	91,320	△71,300	△43.8
여 유 자 금 예 처	162,620	91,320	△71,300	△43.8
예 처 금	162,620	91,320	△71,300	△43.8
행 정 운 영 경 비	7	7	-	-
기 금 관 리 비	7	7	-	-
기 금 관 리 비	7	7	-	-
일 반 운 영 비	7	7	-	-

○ 수입계획변경 : 변경사항 없음

○ 지출계획변경

- 용자금 71,300백만원 증가 (150,000백만원→221,300백만원)

▶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지원을 위해 용자금 증가

- 예치금 71,300백만원 감소 (162,620백만원→91,320백만원)

▶ 수입·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조정

Ⅲ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수입계획 변동없이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①재무활동(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)(△713억원)과 ②투자기관금융지원(713억원)을 증·감 조정하려는 것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
 - 정책사업인 ①재무활동(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)은 당초 지출계획(1조 2,416억 2,700만원)보다 △5.7%, △713억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,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, 다른 정책사업인 ②투자기관금융지원은 당초 지출계획(1,500억원)보다 47.5%, 713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〈표 3-1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 출 합 계	1,391,634	1,391,634	0	-
투 자 기 관 금 용 지 원	150,000	221,300	71,300	47.5
공 사 용 자 지 원	150,000	221,300	71,300	47.5
공 사 직 접 용 자	150,000	221,300	71,300	47.5
재 무 활 동	1,241,627	1,170,327	△71,300	△5.7
행 정 운 영 경 비	7	7	0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계획,
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10.16) 재구성
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동 변경안은 연료비와 열요금 간 불균형 등으로 발생한 서울에너지공사 부족자금 713억원²⁾에 대해 동 계정을 통해 융자하여 재정지원을 하려는 것임

- 다만,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른 '공사·공단 등 융자금'³⁾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지방공사·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의 편성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

2) 서울에너지공사, 예산재정-831('23.10.11) “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요청 검토결과”
- 러·우 전쟁 영향으로 '21년 이후 연료비는 173% 인상된 반면, 같은 기간 열요금은 38% 인상에 그쳐 심각한 재정불균형 발생(한국전력공사 누적적자 200조원,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12조원 등 동일 재정난 발생)
- 2023년말 부족 자금 : 713억원

(단위: 억원)

자금수입 (A)	자금지출 (B)	부족자금 (C=B-A)	자구노력 및 자금일정 조정(D)	실 부족자금 (C-D)	비 고
3,470	4,483*	1,013	300	713	자구노력 및 지출일정 조정 통한 차입금 최소화

* 2022년 부족 자금 이월 263억원 포함

3) 행정안전부,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('22. 7), p.121
공사·공단 등 융자금 :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지방공사·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

-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, ‘공사·공단 등 용자금’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⁴⁾ 이후, 지난 2월, 행정안전부에 ‘공사·공단 등 용자금’을 지방채 발행 없이도 공사·공단에 용자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⁵⁾
- 그러므로 ‘공사·공단 등 용자금’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‘공사·공단 등 용자금’에 대한 개선 요구와 운영기준 명확화 등이 요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

4)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」('22. 12), p7

5) 서울특별시, 예산담당관-2452 ('23. 2.24) “2024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개정 의견제출”

현 행('23년 기준)	개 정 안('24년 기준안)
500 용자 및 출자 501 용자금 03. 공사·공단 등 용자금 1.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지방공사·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	500 용자 및 출자 501 용자금 03. 공사·공단 등 용자금 1.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및 자체재원을 통해 지방공사·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